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0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 ····· 3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 등 권고 근거 마련 ····· 10
3.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 14
4.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시장감시업무 수행 및 안전정보 수집·관리 ····· 19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

3. 회부연월일 : 2025. 1. 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해외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국외 통신판매중개자는 현행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해한 해외어린이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Ⅲ. 검토의견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1호의2·제2호의2 신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 제1항·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1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2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

현 행	개 정 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매출액, 이용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관 전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9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

현 행	개 정 안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결과 및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확대[1)2)]됨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국내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안전성조사 현황]

조사기관	조사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 227개 어린이제품 조사('24.8월·11월, 2회) - 32개 위해제품 발견
서울특별시	► 200개 어린이제품 조사('24.4 ~ 11월, 14회) - 81개 위해제품 발견
한국소비자원	► 55개 어린이제품 조사('24.6·9월, 2회) - 21개 위해제품 발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행법[3)]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

---

1)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액: ('21년) 5조 2,574억원 → ('22년) 5조 9,454억원 → ('23년) 6조 6,819억원 → ('24년) 7조 9,583억원(잠정치) (출처: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

2) 특히,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함.
-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수('24.3월): 쿠팡(3,086만), 알리(887만), 테무(829만), 11번가(740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직구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 '24.5.1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 안전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4]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관세청은 ① 안 제6조의2제2항은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46조의3[5]에서 관세청장과 협업부처의 합동검사에 대하여 규

---

4) 수입물품은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 등을 충족하였음을 관련 기관에서 승인·허가·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이나 개별 법령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에 대해 수입요건을 면제하거나 수입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5)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불필요하며,

② 안 제6조의2제3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6]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된 물품에 관한 자료는 품목번호(HS)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고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자료 제공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 등 권고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사이버몰에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의2 신설), ②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등 조치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권고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현 행	개 정 안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

현 행	개 정 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고, 제9조의2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의 삭제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삭제 등 조치를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불복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9조의2제2항은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권고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 등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4조의2 신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 해제의 신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현 행	개 정 안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 행	개 정 안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내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사업자[7]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함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및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매출액, 이용자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 등 조치 권고의 이행, 조치 결과의 보고 및 조치 권고의 해제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조치 결과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14조의2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1호의 권고의 이행 및 보고와는 달리 제1항제2호의 권고 해제의 신청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43조제1항제2호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안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것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지정요건을 위반한 것은 위반행위의 경

중이 다르므로 처벌수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판매정보 삭제와 삭제 후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등을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위해제품 판매정보 차단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은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타 입법례]

구 분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일정 기준 이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일정 기준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미지정 시 제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시장감시업무 수행 및 안전정보 수집·관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27조),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에----------. ----------.

현 행	개 정 안
1.·2. (생 략) 3. 시험·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의료기관·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4.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관리) ①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②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현행법 제27조[8]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시험·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 있는 제품의 조사·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험·검사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보험회사 등에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8조[9]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조사·감정 등을 위해 필요한 시험·분석, 정보제공 요청, 사고정보 수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7조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

---

4. 의료기관・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외'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요청대상기관에 해외의 관련 기관 또는 사람을 포함할 필요성 및 요청대상 정보의 범위[10]를 해외어린이제품과 국내어린이제품을 동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11].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185호)이 2024년 12월 3일에 발의되어 현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두 개정안은 모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 등 권고,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

---

10) 참고로 현행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은 요청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정보, 어린이제품의 유통량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 어린이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11)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이행확보가 가능한 정보를 요청·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④ (생 략)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 지정 갈음 규정 및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과태료 상한 등에 차이가 있음.

[개정안 비교]

구분	박성민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국내대리인 지정 갈음 규정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갈음함	없음
국내대리인 미지정 및 지정요건 위반 시 과태료 상한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규정	없음	있음

문 의 처
02)6788-5464